

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4798(본소), 2022나448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한영표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16.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단337444(본소), 2019가단 337451(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부산 동구 C 대 430㎡ 중 별지 도면1) 표시 15, 16, 23, 22,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의 블록조 슬라브 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높이 2.2m 블록 담장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 같은 도면 표시 15, 16, 23, 22,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20, 19, 18, 8, 17, 23, 2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0㎡를 각 인도하고, ② 2,917,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21. 10. 27.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430㎡ 중 별지 도면2) 표시 13, 14, 15, 16, 17, 8, 18, 19, 20, 4, 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에 관하여 2019. 7.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13 내지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6-17행의「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를「제1심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8-10행의「이 사건 소장(2019. 17. 10. 27.부터 2019. 2019. 10. 28.까지의 임료로 4,566,100원을 청구하고 있음)에서」를「이 사건 소장(2017. 10. 27.부터 2019. 10. 28.까지의 임료로 4,566,100원을 청구하고 있음)에서」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6행의「함쟁이 상당하다고」를「항쟁함이 상당하다고」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2019. 10. 27.부터 2020. 10. 26.까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임료가 월 13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1. 10. 27.부터 주문 제1.가.항에 표시된 선내 (ㄴ)부분 7㎡, (ㄷ)부분 5㎡, (ㄹ)부분 10㎡에 대한 인도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2. 추가 판단 부분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옹벽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이용하려면 옹벽부터 철거하여야 하고 옹벽의 철거와 재설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넘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상당 기간 경계와 관련한 다툼을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그 청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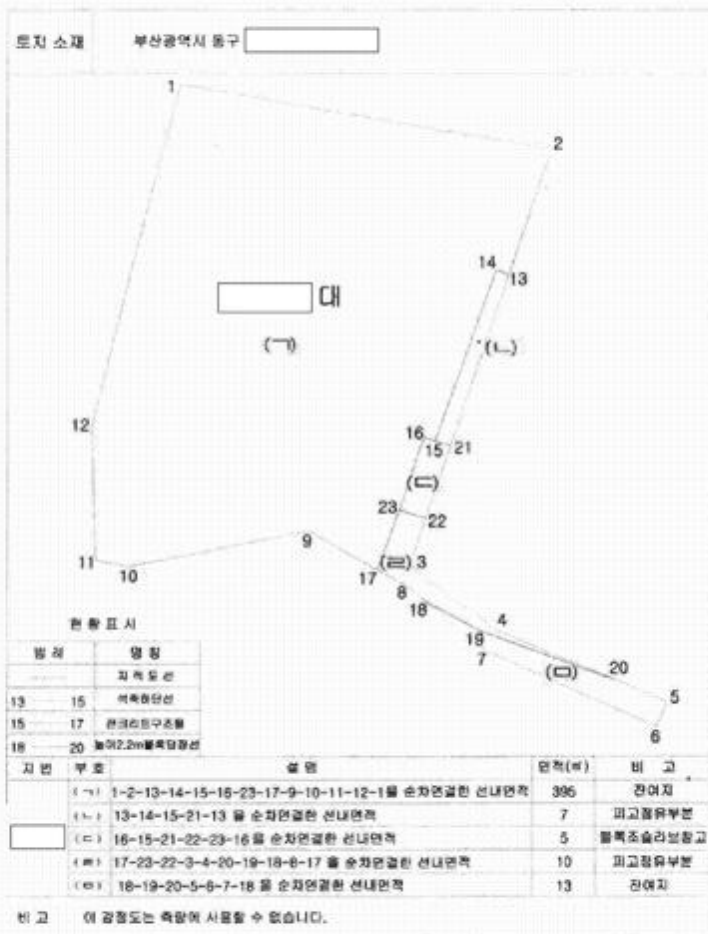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정성호, 판사 최지영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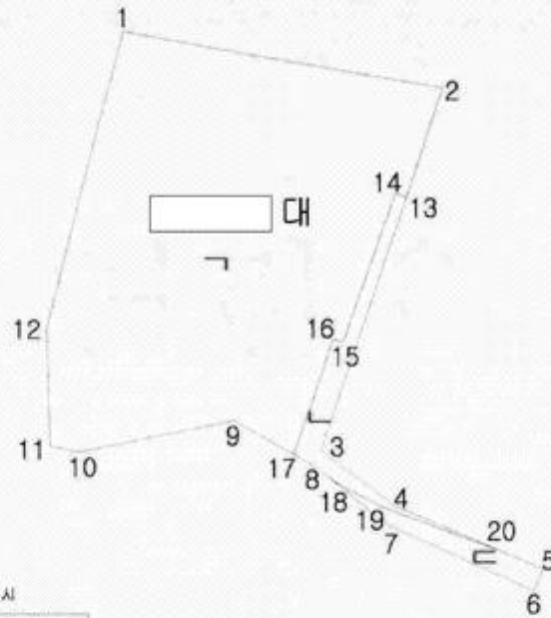
도면



감 정 도

토지 소재

부산광역시 동구



현행 표시

방례	영칭
——	지적도선
13-15	석축하단선
15-17	콘크리트구조물
18-20	높이2.2m 철책단상선

지번	부호	설명	면적(㎡)	비고
	ㄱ	1-2-13-14-15-16-17-9-10-11-12-1을 순차연결한 선내면적	395	잔여지
	ㄴ	13-14-15-16-17-8-18-19-20-4-3-13 을 순차연결한 선내면적	22	미고정유부분
	ㄷ	18-19-20-5-6-7-18 을 순차연결한 선내면적	13	잔여지
비고 이 감정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제1심판결문 제7면 및 이 판결문 제6면에 첨부된 도면을 지칭한다.
- 2) 제1심판결문 제8면 및 이 판결문 제7면에 첨부된 도면을 지칭한다.